

2023년 제11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4호 안건: 중구 운서동 3106-1번지(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12. 2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(주)대우건설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				
	지 번	3106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44,444.34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/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,702.58㎡	건폐율	19.58%	층 수 지하 : 2층 지상 : 25층
	주 용 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	71.3m	용적률	190.37%	연면적 합계 125,195.58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 세부조치사항 4번에 층단차 구간별 상세도 계산근거 추가바람. ○ 사전검토 세부조치사항 9번에 철근의 항복강도는 600이 아닌 500으로 재확인바람. ○ 사전검토 세부조치사항 13번에 저연성도 구간은 전이층이 없는 동에 해당되므로 동별로 정리하여 구조도면에 상세히 표기바람. (내진철근 사용여부 추가표기) ○ 사전검토 세부조치사항 14번에 플랫슬래브 전단보강구간의 전단보강근은 폐쇄형 스테럽을 적용바람. ○ 심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바람.			
	(토질)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